

#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신정호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77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10월 14일

발 의 자 : 신정호, 권수정, 김기대,  
김인제, 김재형, 김정태,  
김제리, 김창원, 김태수,  
김희걸, 노승재, 문장길,  
박기열, 박기재, 박상구,  
박순규, 성흠제, 송명화,  
송아량, 송재혁, 양민규,  
오현정, 유정희, 이광성,  
이정인, 이준형, 임종국,  
장상기, 전석기, 최웅식,  
황규복 의원(31명)

## 1. 제안이유

- 수도요금 이사정산의 경우 ‘아리수 앱’이나 ‘사이버 고객센터’에서 수도계량기 지침을 입력하여 정산요금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정산된 수도요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수도사업소에 별도의 분리고지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, 가스나 전기요금 등 다른 공과금의 경우는 별도 ‘앱’을 통해 정산요금을 확인한 후 바로 실시간 납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.

따라서 이사정산 수도요금 납부의 경우도 분리고지 신청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자적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편의를 제고하고 민원분야 업무부담을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음.

또한, 현행 급수업종 중 ‘공공용’은 2022년 1월 1일부터 ‘일반용’으로 통합됨에 따라 현재 사설소화용 급수설비에 대한 급수업종인 ‘공공용’을 ‘일반용’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수도요금을 전자적시스템으로 고지·수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(안 제30조제3항)
- 나. 사설소화용 급수로 사용한 수돗물의 사용요금 납부기준을 ‘일반용’으로 적용함(안 제19조제3항)

### 3. 참고사항
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##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3항 중 “업무용”을 “일반용”으로 한다.

제3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2항에 따라 분리고지한 수도요금은 전자적시스템(자동화된 시스템)으로 고지·수납할 수 있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9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, 제30조제3항의 신설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9조(사설소화용 급수) ① ~ ② (생 략)</p> <p>③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으로 사용한 수돗물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사용요금 중 <u>공공용</u> 최초단계의 요금의 사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</p>	<p>제19조(사설소화용 급수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<u>일반용</u> ----- -----.</p>
<p>제30조(수도요금의 정산) ① ~ ②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30조(수도요금의 정산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제2항에 따라 분리고지한 수도요금은 전자적시스템(자동화된 시스템)으로 고지·수납할 수 있다.</u></p>